

예천 제2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예천 제2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년 5 월 25 일

예 천 군 수

① 농공단지 일반현황

1. 농공단지 개요 [변경없음]

- 명 칭 : 예천 제2농공단지
- 위 치 :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601번지 일원
- 면 적 : 256,918.5㎡
- 관리기관 : 예천군수

(단위 : ㎡,%)

구분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	비고
면 적 (구성비)	256,918.5 (100)	183,672.2 (71.5)	2,108.6 (0.8)	39,883.1 (15.5)	31,254.6 (12.2)	

2. 조성목적 [변경없음]

-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
- 기업유치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농공단지 조성으로 개별공장 입지로 인한 난개발 방지

3. 시행방법 및 기간 [변경없음]

-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거한 공영개발
- 기 간 : 2013. 5. ~ 2015. 12.

4. 추진경위 [변경]

- 2012. 11. 27 : 예천 제2농공단지 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예천군 고시 제2012-581호)
- 2013. 05. :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공사 착공
- 2015. 04. 20 : 예천 제2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5-133호)
- 2016. 01. 25 : 예천 제2농공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예천군 고시 제2016-13호)
- 2016. 05. 23 : 예천 제2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6-131호)

5. 분양현황 [변경]

용지구분	총면적	분 양 현 황			조성 기간	조성 기관
		분양	미 분 양	계		
변 경 전	계	256,918.5	78,724.0	106,371.1	2013 ~ 2015	예천군
	산업시설	183,672.2	78,724.0	104,948.2		
	지원시설	2,108.6	-	1,422.9		
	공공시설	39,883.1	-	-		
	녹지시설	31,254.6	-	-		
변 경 후	계	256,918.5	115,453.6	69,641.5	2013 ~ 2015	예천군
	산업시설	183,672.2	114,030.7	69,641.5		
	지원시설	2,108.6	1,422.9	-		
	공공시설	39,883.1	-	-		
	녹지시설	31,254.6	-	-		

6. 입주현황 [변경]

구 분		입주업체 수(개)			면 적 (㎡)		
		제조업	기타	계	제조업	기타	계
변 경 전	계	25	-	25	183,672.2	-	183,672.2
	2016. 04월	-	-	-	-	-	-
	향후계획	25	-	25	183,672.2	-	183,672.2
변 경 후	계	25	-	25	183,672.2	-	183,672.2
	2018. 05월	12	-	12	114,030.7	-	114,030.7
	향후계획	13	-	13	69,641.5	-	69,641.5

7. 입지여건(기반시설) [변경]

○ 기 정

시설명		2016. 04월 현재	관리기관
교통	도로	○ 중앙고속도로 예천IC 이용 (예천 IC 5km) ○ 지방도 928호선 및 국도 28호선이용	-
	철도	○ 경북선(김천~영주)이 인근에 통과하며, 예천역 이용	-
	단지내 도로	○ 중로 4개, 소로 5개 노선 - 연장 : 2,390m, - 폭원 : 3~20m	예천군
용 수		○ 용수량 : 1,607.9㎥/일(공업용수 1,514.2㎥/일, 생활용수 93.7㎥/일) - 공업용수 : 내성천에서 단지내 배수지로 저장 후 공급 - 생활용수 : 예천배수지에서 기존관로분기(통명정미소) 후 급수관로를 통해 공급	예천군
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 : 179.4(ton/일) ○ 생활 폐기물 : 0.851(ton/일) ○ 사업지구에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중 소각대상인 가연성 폐기물과 매립대상인 불연성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할 계획이며,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할 계획임	
오 · 폐수		○ 오·폐수 발생량 1,005.3㎥/일 - 공장폐수 924.5㎥/일(지하수량 10% : 84.0㎥/일 포함) - 생활오수 80.8㎥/일(지하수량 10% : 7.5㎥/일 포함) ○ 각 공장별로 1차처리 후 생활오수와 같이 사업지내 폐수중 말처리시설에서 통합처리 후 고평천 방류	예천군
전 력		○ 전력사용량 : 110,133MWh/년 (산업시설 108,946MWh/년, 기타시설 1,187MWh/년) ○ 한국전력공사 예천변전소에서 전력공급	한국전력공사 (부산경남개발처)
통 신		○ 총 통신수요량 : 868회선(산업시설 837회선, 지원시설 9회선, 공공시설 22회선) ○ KT 예천지사에서 공급	KT
환 경		○ 대상지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차후발생이 예상되는 영향예측, 환경보전에 관한 홍보 및 오염물질 배출 규제, 환경감시 체계 확립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및 단속을 실시	예천군

○ 변 경

시설명		2018. 05월 현재	관리기관
교통	도로	○ 중앙고속도로 예천IC 이용 (예천 IC 5km) ○ 지방도 928호선 및 국도 28호선이용	-
	철도	○ 경북선(김천~영주)이 인근에 통과하며, 예천역 이용	-
	단지내 도로	○ 중로 4개, 소로 5개 노선 - 연장 : 2,390m, - 폭원 : 3~20m	예천군
용 수		○ 용수량 : 1,543.8(감 64.1)m³/일 (공업용수 1,468.8(감 45.4)m³/일, 생활용수 75.0(감 18.7)m³/일 - 공업용수 : 내성천에서 단지내 배수지로 저장 후 공급 - 생활용수 : 예천배수지에서 기존관로분기(통명정미소) 후 급수관로를 통해 공급	예천군
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 : 1,627.846(증 1,448.446)(ton/일) ○ 생활 폐기물 : 0.465(감 0.386)(ton/일) ○ 사업지구에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중 소각대상인 가연성 폐기물과 매립대상인 불연성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할 계획이며,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할 계획임	
오 · 폐수		○ 오·폐수 발생량 925.6(감 79.7)m³/일 - 공장폐수 860.0(감 64.5)m³/일 - 생활오수 65.6(감 15.2)m³/일 ○ 각 공장별로 1차처리 후 생활오수와 같이 사업지내 폐수중 말처리시설에서 통합처리 후 고평천 방류	예천군
전 력		○ 전력사용량 : 112,016(증 1,883)MWh/년 (산업시설 110,829(증 1,883)MWh/년, 기타시설 1,187MWh/년) ○ 한국전력공사 예천변전소에서 전력공급	한국전력공사 (부산경남개발처)
통 신		○ 총 통신수요량 : 868회선(산업시설 837회선, 지원시설 9회선, 공공시설 22회선) ○ KT 예천지사에서 공급	KT
환 경		○ 대상지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차후발생이 예상되는 영향예측, 환경보전에 관한 홍보 및 오염물질 배출 규제, 환경감시 체계 확립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및 단속을 실시	예천군

②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1. 기본방향 [변경없음]

- 예천군 호명면 및 안동시 일대에 경북도청 이전에 따른 공장수요 증가에 계획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농공단지 조성
- 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예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

2. 관리할 농공단지의 면적 [변경없음]

(단위 : m²,%)

구분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	비고
면적 (구성비)	256,918.5 (100)	183,672.2 (71.5)	2,108.6 (0.8)	39,883.1 (15.5)	31,254.6 (12.2)	

3. 입주대상 업종, 입주자격 및 입주 우선순위, 농공단지 발전계획 [변경]

- 입주대상 업종 (별첨1참조) [변경]

■ 당초

업종별구분
■음·식료품 (C10, 1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C17)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C2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C22) ■금속가공제품제조업 (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C27) ■전기장비제조업 (C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 단,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9조 및 제36조에 의하여 사업성 및 환경성 검토에 따라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 변경

업 종 별 구 분
■ 음·식료품 (C10, 11)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C17) ■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C20)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C21)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C22) ■ 비금속광물제조업 (C23) ■ 금속가공제품제조업 (C25)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C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C27) ■ 전기장비제조업 (C28)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 부동산 임대업 (68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 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 단,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9조 및 제36조에 의하여 사업성 및 환경성
검토에 따라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 입 주 자 격 [변경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으로 동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 입주자격)의 규정에 의거 입주
자격을 갖춘 자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9조 및 제36조에 따라 사업성
및 환경성 적합 업체
- 별첨1 입주 대상 업종

○ 입주 우선순위 [변경없음]

- 예천군 이외 시·군·구에서 본사 또는 공장 이전을 위하여 협약(양해각서)을 체결한 업체
- 지역주민을 50% 이상 고용하는 업체 또는 지역특산물 가공업체
(현지 부존 자원을 제품원료의 50%이상 활용)
- 분양대금을 일시납 또는 우선 완납하는 업체
- 재무구조가 건전하며 자체자금 조달 및 신용평가 등에 적합한 업체
- 위 사항에 외에도 예천군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로 결정한 업체를 최우선으로 함

○ 사후관리계획 [변경없음]

- 분양용지 관리
 -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관리지침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리
 - 경매,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법전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입주계약 해지
- 환경관리
 -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내용과 수질, 대기, 소음, 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등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 안전관리
 - 관리기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 공해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음
 - 산업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예방지도활동 강화

4. 생산·수출 및 고용전망 [변경추가]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생산활동 및 수출증대	○ 연도별·품목별 생산·수출계획 수립 ○ 생산·수출에로 타결을 위한 업종별 간담회·설명회 등 개최 ○ 품목별·지역별 해외시장 동향 파악 ○ 기타 생산·수출촉진시책 지원 및 정보제공
경영 및 기술 개발 지원사업	○ 공장자동화 유도 ○ 기업경영을 위한 법률상담 실시 ○ 생산성향상 및 품질관리 활동강화 ○ 해외인증 획득 지원
고용전망 및 근로자 복지사업	○ 농가의 유희노동력[주부, 고령자]의 흡수로 농외소득 증대 ○ 외국인 근로자 확보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의] ○ 공익근무요원의 최대한 확보 지원[지방병무청과 협의] ○ 취업상담실 운영 ○ 유희인력[주부, 고령자]활용방안 강구 ○ 인근지역 인력수급을 위한 통근버스 공동이용

5. 임금소득, 원자재 공급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전망 [변경추가]

- 농공단지 조성의 효과는 농업에 의한 단순한 생산보다는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효과가 크며 소득창출이 활발하여 지역경제의 성장과 아울러 주민소득의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
-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고용과 소득 증가 시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또한 읍·면지역의 유희노동력과 잠재 실업인을 흡수하여 지방주민의 소득증대와 직결
- 본 농공단지 조성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에 이바지하여 지역 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킴으로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예천군의 지역 자립기반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

6. 입주기업의 직종별 인력수요 및 지역기능인력 육성 등 지역별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변경]

○ 인력채용계획 [변경없음]

- 총 채용인원은 약 889명으로 계획하며 현지 주민 우선 채용

○ 입주기업의 직종별 인력수요 전망 [변경]

단위 : 명

구 분	입 주 업 체 수	고 용 인 원 (명)			비 고
		계	기능인력	단순노무	
기정	25	820	250	570	기능인력은 고용인원의 30% 예상
변경	25	889	267	622	기능인력은 고용인원의 30% 예상

○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농공단지 인근의 취업가능 인력 현황) [변경]

단위 : 명

구 분	15세 이상 ~ 65세 미만 인구					경제활동참 가율 (%)	고용율 (%)
	총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계	취업자	실업자			
기정	26,959	18,790	18,771	19	8,169	69.7	69.6
변경	39,300	26,400	26,300	100	12,900	67.0	74.1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kr), 예천군 통계연보

○ 예천군 내 사업체 현황 [변경]

단위 : 명

구분	계	농업, 임업 및 어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건설업	서비스업	기타
기정	3,155	14	264	809	648	268	168	833	151
변경	3,302	14	275	828	687	274	201	856	167

자료 : 예천군 통계연보, 사업체수

7. 인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및 개별공장에 대한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에 대한 전망 및 협력강화 방안 [변경추가]

-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 즉, 행정 및 세제, 토지매입에 대한 융자 등 기업유치차원의 다양한 혜택
- 연구 및 생산인력이 거주할 수 있는 숙박시설 및 배후도시 조성 등 정주환경 개선
- 연구개발의 활성화와 결과의 확산이 원활하게 연계되는 선순환구조의 구현
- 타 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 산업단지의 교통여건 개선 및 광역교통망 접근성 강화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생산활동 및 수출증대	○ 연도별·품목별 생산·수출계획 수립 ○ 생산·수출애로 타결을 위한 업종별 간담회·설명회 등 개최 ○ 품목별·지역별 해외시장 동향 파악 ○ 기타 생산·수출촉진시책 지원 및 정보제공
경영 및 기술 개발 지원사업	○ 공장자동화 유도 ○ 기업경영을 위한 법률상담 실시 ○ 생산성향상 및 품질관리 활동강화 ○ 해외인증 획득 지원
경쟁력 강화	○ 업체간 상호정보교환 및 제품 판매지원 ○ 업종별, 품목별 공동브랜드 개발 ○ 입주업체간 협의회의 활성화로 협력 및 애로사항 공동해결

8.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 [변경]

○ 용지의 용도별 구역 (별첨2 참조) [변경없음]

(단위 : m²,%)

구분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	비고
면적 (구성비)	256,918.5 (100)	183,672.2 (71.5)	2,108.6 (0.8)	39,883.1 (15.5)	31,254.6 (12.2)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라 업종별 공장 배치 [변경없음]

○ 입주 업체간 연관이 있는 경우 계열화가 가능하도록 배치 [변경없음]

○ 산업시설구역 [변경추가]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 및 부대시설

○ 지원시설구역 [변경추가]

-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관리기관이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공공시설구역 [변경추가]

- 지원시설구역 건축물 범위 외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

○ 녹지시설구역 [변경추가]

- 녹지로 유지·관리

○ 업종별 배치계획 (별첨3 참조) [변경]

구 분		면적 (㎡)	구성비 (%)	
당초	산 업 시 설 용 지		183,672.2	100.0
	C10,C11	A	30,753.8	16.7
	C20,C21,C27,C28	B	36,923.8	20.1
	C10,C17,C25,C29	C	72,243.7	39.3
	C10,C11,C26	D	28,371.3	15.5
	C22,C30	E	15,379.6	8.4
변경	산 업 시 설 용 지		183,672.2	100.0
	C10,C11	A	30,753.8	16.7
	C20,C21,C23,C27,C28	B	36,923.8	20.1
	C10,C17,C25,C29	C	72,243.7	39.3
	C10,C11,C26	D	28,371.3	15.5
	C22,C30	E	15,379.6	8.4
	부동산 임대업 68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 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 단,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9조 및 제36조에 의하여 사업
성 및 환경성 검토에 따라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 A : 식료품, 음료제조업(10,11)

B :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비금속 광물 제품,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 제조업(20,21,23,27,28)

C : 식료품,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금속가공제품,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10,17,25,29)

D : 식료품, 음료,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10,11,26)

E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22,30)

9.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이용건축물과 기타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용계획

[변경추가]

- 하수배제방식은 수질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의 유지관리 및 처리효과 제고 등을 감안하여 우·오수 분류식으로 조성
- 각 공장별로 1차처리 후 생활오수와 같이 사업지내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통합 처리 후 고평천 방류
- 산업시설 및 지원시설 생활오수량 산정

구 분	생활 용수공급량 (㎥/일)	오수 발생량 (㎥/일)
산업시설 및 지원시설	75.0	65.6

주) 제2단계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08. 9. 국립환경과학원 적용

- 산업시설 폐수량 산정

구 분	면적(㎡)	용수원단위 (㎥/천㎡.일)	용수량 (㎥/일)	폐수화율 (%)	폐수 발생량 (㎥/일)
합 계	183,672.2	-	1,468.8	-	860.0
A	30,753.8	9.03	278.0	57.9%	161.0
B	36,923.8	9.58	353.0	50.5%	178.3
C	72,243.7	6.44	465.2	68.2%	317.3
D	28,371.3	10.90	309.2	60.5%	187.1
E	15,379.6	3.95	63.4	25.7%	16.3

※ 오·폐수량 원단위는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 자료를 토대로 유치업종 평균치를 산정하여 적용

※ A : 식료품, 음료제조업(10,11)

B :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비금속 광물 제품,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 제조업(20,21,23,27,28)

C : 식료품,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금속가공제품,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10,17,25,29)

D : 식료품, 음료,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10,11,26)

E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22,30)

○ 지원시설 설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업체 사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 공동이용건축물과 기타 지원시설 운용계획

- 대상지 내 지원시설용지를 계획하여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농공단지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도모하기 위해 2,816㎡로 계획
- 지원시설 용지계획

구 분	면 적(㎡)	비 고
지 원 시 설 용 지	2,108.6	전체면적의 0.8%

10. 입주기업체에 대한 시설·운전자금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 분	지 원 내 용
세제혜택	○ 소득세 또는 법인세 :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50% 감면 ○ 취득세 : 면제('16년 이후 75% 감면) ○ 재산세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면제('16년 이후 75% 감면) ○ 종합부동산세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면제
생산활동 및 수출증대	○ 연도별·품목별 생산·수출계획 수립 ○ 생산·수출애로 타결을 위한 업종별 간담회·설명회등 개최 ○ 품목별·지역별 해외시장 동향 파악 ○ 기타 생산·수출촉진시책 지원 및 정보제공
경영 및 기술 개발 지원사업	○ 공장자동화를 위한 생산기술 강화 유도 ○ 기업경영을 위한 법률상담 실시 ○ 생산성향상 및 품질관리 활동강화 ○ 해외인증 획득 지원
경쟁력 강화	○ 업체간 상호정보교환 및 제품 판매지원 ○ 업종별·품목별 공동브랜드 개발 ○ 물류공동화 추진 및 시설지원

11. 그 밖에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

○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등 환경저감대책

- 하수는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며,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수는 각 공장별로 1차 처리 후 생활오수와 같이 사업지내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통합처리 후 고평천 방류
- 저류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홍수조절기능을 갖는 다목적 시설로 조성, 관리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
- 대기오염물질 저감은 개별공장이 입주할 때 공장의 시설에 따라 개별적인 대기오염저감시설 설치를 계획
- 가급적 고체연료 사용을 지양하고, 청정연료 사용을 유도
- 대상지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차후발생이 예상되는 영향예측, 환경보전에 관한 홍보 및 오염물질 배출 규제, 환경감시 체계 확립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및 단속을 실시
-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내용과 수질, 대기, 소음, 진동 등의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등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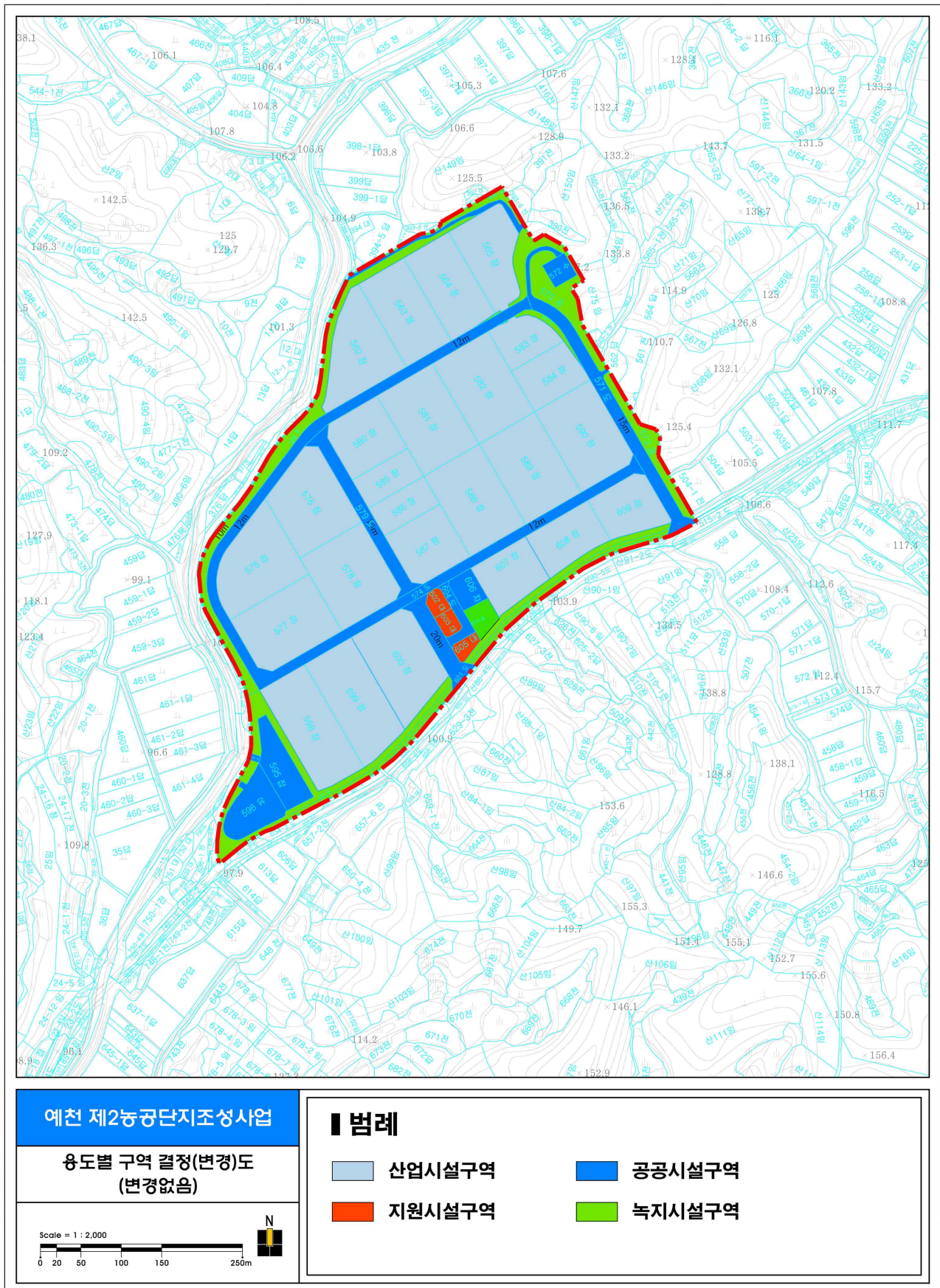
○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관리

【별첨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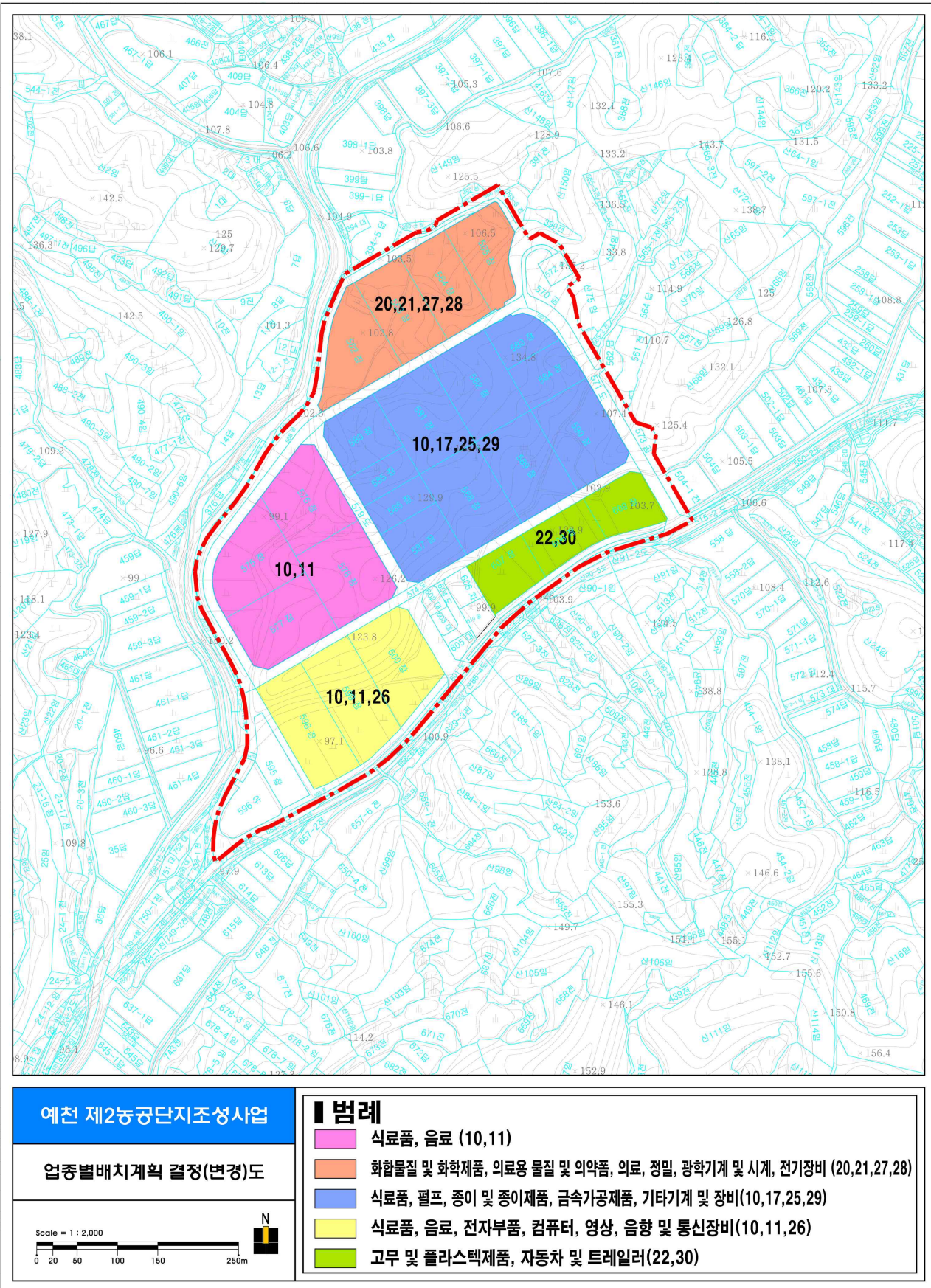
입 주 대 상 업 종

' 18. 05. 현재				향 후 계 획	
입 주 업 종 (산업중분류)		업체수	면 적	입 주 업 종 (산업 중 분 류)	입 주 업 종 중 제 외 업 종
구 역	계	12	114,030.7	■ 식료품 제조업(C10) ■ 음료 제조업(C11)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C22) ■ 비금속 광물제품(C23) ■ 금속가공제품(C25)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C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 전기장비 제조업(C28)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A	음식료품(C10,11)	1	36,923.8		
B	비금속 광물 제품(C23)	1	6,935.4		
C	식료품(C10)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C17) 금속가공제품(C25)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6	26,420.6		
D	음료품(C11)	1	28,371.3		
E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C22) 자동차 및 트레일러(C30)	3	15,379.6		

【별첨 2】 용도별 구역결정(변경)도



【별첨 3】업종별배치계획도(기정)



업종별배치계획도(변경)

